

창업보육센터지원협약서

- 사업명: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
- 협약기간: 1999년 7월 ~ 2004년 6월(5년간)
- 협약당사자
(갑) 경산시장

(을) 대구대학교 총장

위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에 관하여 (갑)과 (을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사업의 목표)

신기술 개발과 이를 이용한 창업보육을 통해 고용인력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의 수행)

(을)은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사업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별첨 1의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(갑)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입주업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.

제 3 조 (출연금의 지급)

(1) (갑)은 (을)에게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산시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(가) 경산시출연금

- 기간: 1999년 7월 ~ 2004년 6월(5년간)
- 지원금액: 100,000천원

(2) (을)은 지급 받은 사업비를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사업운영요령(이하 "운영요령"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사업 결과보고)

(을)은 2000년까지 결과보고서 10부를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관계자료의 제출 등)

(을)은 (갑) 또는 (갑)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협약의 변경)

(갑)과 (을)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7 조 (협약의 해약)

(1) (갑)과 (을)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(2) (갑)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(가)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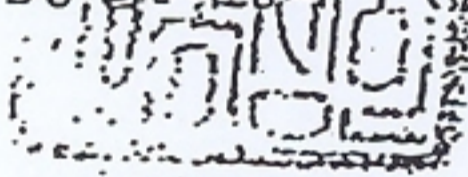
(나)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(3)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(을)은 기 수령한 출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(갑)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잔액은 (갑)이 환수한다.

제 8 조 (해석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(갑)의 해석에 의한다.

본 협약서의 2통을 작성하여 (갑)과 (을)인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

1999년 월 일

(갑) : 경신



(을) : 대구대학교

